

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1호)

- 2018. 09. 10.
- 재정건설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07.24.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07.25.
- 다. 상 정 일 자 : 2018.09.10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: 위생과장 김정사)

-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하여,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- 이에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『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최충열)

■ 본 동의안은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1) “서초구의회는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,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‘서초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’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.

■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

-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²⁾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설립하였고,

1)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(삭제 2013.05.02.)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서초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신설 2011.11.1.)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,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신설 2013.05.02.)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1.9.> 1. 인적·물적 현황 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. 사건·사고 현황 6. 성과평가 자료 등

2)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7., 2014. 1. 28.>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-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3)에 따라 ‘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’에 민간위탁하였으며,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.
- 예산은 국·시·구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30:35:35이며, 2018년 예산 3억 원 중 구비로 약 1억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- 현재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및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104개소 4,0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급식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,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원, 원장 및 교사,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합 및 방문교육,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,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, 나트륨 및 당 줄이기 교육, 식생활캠프, 통신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.
-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 간, 서울식약청과 서초구의 감사 및 감독 상 지적사항, 사건·사고 발생은 없었으며, 식약처 평가에서 평균 93점을 받았습니다.

■ 이와 같이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은

「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4)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,

3)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5.1.28.>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4)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같은 조례 제4조의2 제2호 보건·위생 및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합당하며,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,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)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고,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, 현재 급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얼마이며,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바람

답 : 관내 어린이집은 대다수가 100인 미만인데, 국·공립, 민간을 합해서 총 232개소 어린이급식시설 중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,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

질) 식약처 평가에서 평균 93점을 받았는데, 전체 순위와 감점 이유는?

답 : 우리와 같은 3억 시설에서는 1등이며, 감점요인은 전체 어린이집 232개소 중 관리율이 50%가 안되고, 규모가 작은 것이 감점요인임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10. 체계사구정리내용 : 없음